

이단종교활동 규제 규정

(제정 1989.11.2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정통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인정한 종교집단(이하 “이단”이라 한다)의 일체의 활동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8.26.>

제2조(정의) 이단이란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지 아니하고,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단체(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(신천지), 기독교복음선교회 (JMS), 통일교, 여호와 증인,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, 물몬교, 기독교복음침례회 등)를 말한다. <개정 2015.8.26.>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 모든 구성원에 적용한다. <개정 2015.8.26., 2015.10.26.>

제4조(적용내용) ① 본교 전 구성원은 종교활동 관련 단체 구성 시 선교봉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8.26., 2015.10.26.>

② 삭제 <2015.10.26.>

③ 교내에서 교내구성원 및 외부인이 종교관련 활동(포교활동, 포스터 부착, 선전물, 집회, 세미나 등)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봉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8.26., 2015.10.26.>

제5조 삭제 <2015.8.26.>

제6조(심의위원회) ① 종교활동 단체 구성과 활동 허가, 이단활동 규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5.10.26.>

② 위원은 선교봉사처장, 학생취업처장, 대학교회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선교봉사처장이 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선교지원실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[본조개정 2015.8.26.]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이단 활동 규제와 관련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이단 활동 규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
3. 이단 판정 및 징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

[본조개정 2015.8.26.]

제8조 삭제 <2015.8.26.>

제9조 삭 제 <2015.8.26.>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